

2023년도 제1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8. 3.(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강태욱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8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김태일 주임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01건(안건번호 제2023-119306호~12110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19306호~119315호는 블로그에 음악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감상평, 후기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19316호~119320호는 ♥♥♥ ♥♥♥에 악보를 게시한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2023-119316호~119319호는 유료로 판매되는 원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고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안건번호 제2023-119320호는 유료로 판매되는 원저작물의 일부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게시글 본문 내용과 댓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저작물에 대해 복제물의 확산가능성 및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19321호~119330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19331호~119365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19366호~119372호는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19373호~119386호는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19387호~12110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18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27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 2023-16665호~16939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275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8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185회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전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29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3-119306호~121106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119306호~11931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게시자가 자신의 생각,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 블로그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 저작물을 제공한 사안 총 10건임.

(안전번호 제2023-11930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화분걸이대를 만든 사진과 함께 식물의 성장일기를 게시하고 있음. 게시글 하단에 음악 '◆◆ ◆◆ ◆◆◆'의 전체 분량이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1930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 ■■■■■■■■■■'라는 제목으로 게시자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삶을 사는 태도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음. 게시글 하단에 음악 '♣♣♣ ♣♣♣♣ ♣♣♣♣ ♣♣'의 전체 분량이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1931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라는 제목으로 게시자가 본인의 설법을 게시하고 있음. 게시글 하단에 음악 '♠♠'의 전체 분량이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19306호~119315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저작물과 함께 감상평, 후기 등을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3-119314호의 심의대상 게시글에는 해당 음악의 뮤직비디오가 게시되어 있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일반 사진에 음악을 입혀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 공식 뮤직비디오는 아님.
- C 위원: 이러한 음악 안전에 대한 기존의 심의 사례가 있는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제2023-147회 2분과위원회와 제2023-168회 3분과위원회에서 게시자가 자신의 생각,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 저작물을 제공한 사안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 C 위원: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이유는 공정이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음악 저작물 외의 다른 내용의 글이 작성되어 있는 게시글을 음악 저작물만을 이유로 삭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 이숙형 부장: 경고의 시정권고를 통해 게시자가 직접 해당 게시글에서 음악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함.
- C 위원: 그렇다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저

작물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가.

- 반하람 주임: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이미 시정권고가 발송된 URL의 경우 중복으로 접수가 되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숙형 부장: 경고가 나간 게시글들의 사후 조치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포털의 경우 계정 정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대안으로 혹시 게시글 자체가 아니라 음악 저작물만을 삭제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에 문의하였으나 현 시스템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A 위원: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저작물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경우는 ♥♥♥에서 안내를 했음에도 게시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경고의 시정권고가 가결될 경우 ♥♥♥에서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달라는 안내 메일이 발송되어, 게시자가 직접 해당 게시글에서 음악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을 유도함.
- A 위원: 그렇다면 블로그에 음악 저작물이 게시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있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블로그에 게시된 음악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음

악의 가사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퍼와서 함께 게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가 가결되고 있음. 게시자 본인이 자신의 생각,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한 경우에만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있음.

- A 위원: 그렇다면 안전번호 제2023-119306호~119315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표현이 함께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이란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게시자 본인이 작성한 글로 판단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19306호~11931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9306호~119315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음악저작물과 함께 감상평, 후기 등을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119316호~119320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건으로, ♥♥♥ ♥♥♥에 '★★★★★ ★★★★★ ★★★★★★★', '☆☆☆☆☆ ☆☆☆☆' 등의 악보를 요청하는 질문글과 해당 악보를 제공하는 답변이 게시된 사안 총 5건임.

(안건번호 제2023-11931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 ★★ ★★ ★★★★★'의 제목으로 피아노 악보를 구한다는 내용의 질의글에 해당 곡의 악보 4장을 제공하는 답변글이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악보는 악보 유통 사이트에서 총 4장이 1,200원에 합법 유통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3-11931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 ☆☆ ☆ ☆☆☆☆ ☆'의 제목으로 피아노 악보를 구한다는 내용의 질의글에 해당 곡의 악보 6장을 제공하는 답변글이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악보는 악보 유통 사이트에서 총 7장이 1,400원에 합법 유통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3-11931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의 제목으로 합창곡의 악보를 구한다는 내용의 질의글에 다양한 동요의 악보(총 6곡)를 제공하는 답변글이 게시되어 있음. 6곡 중 1곡인 '▲▲ ▲▲'의 악보는 악보 유통 사이트에서 총 2장이 1,000원에 합법 유통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3-11931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의 제목으로 기타 악보를 구한다는 내용의 질의글에 해당 곡의 악보 1장을 제공하는 답변글이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악보는 악보 유통 사이트에서 총 1장이 500원에 합법 유통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3-11932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

의 제목으로 피아노 악보를 구한다는 내용의 질의글에 해당 곡의 악보 일부와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답변글이 게시되어 있음. 현재 링크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악보에 기재된 URL은 악보판매 사이트인 ◆◆◆◆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악보는 피아노3단 악보 총 3장으로 게시된 악보와 동일하지는 않음.

기존 심의 사례로는 제2023-168회 심의위원회(2023. 7. 12. 제3분과위원회)는 네이버 지식인에 악보를 게시한 사안에 대해 게시글 본문 내용과 댓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저작물에 대해 복제물의 확산가능성 및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한 바 있음. 또한, 제2023-176회 심의위원회(2023. 7. 19. 제3분과위원회)는 네이버 지식인에 악보를 게시한 사안에 대해 합법 시장에 유료로 유통되는 악보의 전부를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답변글 게시자에 대한 경고 및 답변글에 대한 삭제 및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음.

안건번호 제2023-119316호~119319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유료로 판매되는 원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고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의견이며, 제2023-119320호는 원저작물의 일부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게시글 본문 내용과 댓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저작물에 대해 복제물의 확산가능성 및 저작물이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시장대체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일회적이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3-119320호의 심의대상 답변글은 현재 악보에 기재된 URL로 확인되는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악보와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3-119320호의 심의대상 답변글에 게시된 악보 일부의 분량은 전체 분량의 절반 정도 되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동일한 악보는 아니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피아노 악보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B 위원: 1/3 정도의 분량을 게시하고 있지만, 일부만을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분량을 게시한 제2023-119316호~119319호의 심의대상 답변글과는 구별된다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보통 악보판매 사이트에서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은 미리보기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이용한 것으로 추측됨.

- B 위원: 악보판매 사이트에서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분량인 것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업로드할 권리가 없는 게시자가 악보를 전송중인 행

위에 대해서 분량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기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됨.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3-119320호의 심의대상 답변글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일회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가 무엇인가.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답변글이 게시된 전체 게시물은 질의글 형식의 게시물이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된 게시글과 달리 저작물에 대해 복제물의 확산가능성 및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
- C 위원: 제2023-168회 심의에서 부결된 심의대상 답변글을 시연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안전번호 제2023-8909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답변글이 '●●●●'의 악보 일부를 게시하고 있는 사안이었음.
- B 위원: 해당 답변글은 악보 1장의 일부만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23-119320호의 심의대상 답변글은 악보 1장의 전체 분량을 게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됨.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3-119320호의 심의대상 답변글에 대해 시정권고를 부결하려면, 적어도 해당 답변글에 게시된 악보의 일부가 타 합법사이트에 동일하게 게시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답변글에 게시된 악보

를 이용한다고 해서 시장의 대체가능성이 없다,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등의 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반하람 주임: (안전번호 제2023-119320호의 합법 판매 페이지를 보여 주면서) 현재 ◆◆◆◆에서 판매하고 있는 악보는 피아노3단 악보 총 3장임.
- B 위원: 분량에 있어서도 안전번호 제2023-119320호의 심의대상 답변글의 악보는 ◆◆◆◆에서 판매하고 있는 악보와 면대면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3-119316호~119319호의 심의대상 답변글과 안전번호 제2023-119320호의 심의대상 답변글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됨. 합법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법 유통 사이트에서 첫 페이지 정도는 샘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9316호~119319호는 유료로 판매되는 원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고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안전번호 제2023-119320호는 유료로 판매되는 원저작물의 일부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게시글 본문 내용과 댓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저작물에 대해 복제물의 확산가능성 및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119321호~11933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의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6건임.

(안전번호 제2023-119321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 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19321호~119330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19321호~11933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9321호~119330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119331호~11936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ㅎㅎㅎㅎ', '♡♡♡♡', 및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41건임.
(안전번호 제2023-11933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ㅎㅎㅎㅎ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119331호~119365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 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19331호~11936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9331호~119365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119366호~11937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및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18건임.
(안전번호 제2023-11936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의 불법 번역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19366호~11937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9366호~119372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19373호~119386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의 불법복제물 총 16건임.
(안전번호 제2023-11938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웹하드에서 만화 '■■■ ■■■■ ■■■■ ■■■'을 판매 중임.
해당 안전번호 제2023-119373호~119386호의 16개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19373호~11938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9373호~119386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119387호~12110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택배기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19760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택배기사'의 1화에서 6화 전체 분량을 44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5. 12.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드라마 '시크릿 인베이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20003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시크릿 인베이션'의 6화 전체 분량을 21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6. 21 ~ 7. 26.에 디즈니+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영화 '바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21005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바비'의 1시간 46분 전체분량을 1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7. 19.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119387호~12110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119387호~12110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9387호~12110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19306호~119315호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19316호~119319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19320호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19321호~119330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19331호~119365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19366호~119372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19373호~119386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19387호~12110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1쪽부터 2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665호~16939호(순번 1번~275번)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8. 10.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강태욱

위원 하병현